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0. 7 선고 2015가단186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말소]

전 문

원고A

피고1. B

2. C

변론 종결무변론

판결 선고2015. 10. 7.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8,200,000원 및 그 중,
가. 28,800,000원에 대하여 2013. 10. 28.부터,
나. 8,400,000원에 대하여 2013. 3. 28.부터,
다. 21,000,000원에 대하여 2013. 7. 22.부터 각 값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5. 3. 16.자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3.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3. 17. 접수
제106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 B에 대한 금전지급 청구 부분(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 2013. 3. 28.자 대여금 840만 원(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원 2013. 4. 8. 작성 증서 2013년 제28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2013. 7. 22.자 대여금 2,100만 원(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원 2013. 8. 8. 작성 증서 2013년 제59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2013. 10. 28.자 대여금 2,880만 원(공증인 D 2013. 12. 11. 작성 증서 2013년 제104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매매예약 취소 및 가등기 말소 청구 부분

- 피고 B이 위와 같이 원고에게 차용금 상환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여 준 것은 사해행위이므로,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신종열

별지